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재무제표와 부속서류)”를 “(재무제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순자산변동표”를 “순자산변동표 및 현금흐름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자산과 부채는 업무의 특성, 유동성, 중요도 등을 감안하여 배열한다.

제9조제2항 중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사회기반시설, 무형자산 및 기타 비유동자산”을 “금융자산, 유·무형자산 및 기타자산”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필수보충정보”를 “주석으”로 한다.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금융자산) ① 금융자산은 현금, 소유지분에 대한 증서 및 현금(또는 다른 금융자산)을 수취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금융자산을 교환할 수 있는 계약상의 권리를 말한다.

- ② 제1항의 금융자산은 현금및현금성자산, 금융상품, 투자증권, 정부

출자금, 대여금, 미수채권, 기타금융자산으로 구분한다.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유·무형자산) ① 유·무형자산은 일반유형자산, 사회기반시설 및 무형자산으로 구분한다.

② 일반유형자산은 고유한 행정활동에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제3항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③ 사회기반시설은 국가의 기반을 형성하기 위하여 대규모로 투자하여 건설하고 그 경제적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자산을 말한다.

④ 무형자산은 물리적 실체가 없지만 식별할 수 있고, 국가회계실체가 통제하고 있어 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자산을 말한다.

제16조의 제목 “(기타 비유동자산)”을 “(기타자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기타 비유동자산은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사회기반시설 및 무형자산”을 “기타자산은 금융자산과 유·무형자산”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장기충당부채 및 기타 비유동부채”를 “차입부채, 충당부채 및 기타부채”로 한다.

제19조 및 제2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차입부채) 차입부채는 현금(또는 다른 금융자산)을 지급하거

나 불리한 조건으로 금융자산을 교환해야하는 계약상의 의무로 국채,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액 및 기타차입부채로 구분한다.

제21조의 제목 “(장기충당부채)”를 “(충당부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장기충당부채는”을 “충당부채는”으로, “퇴직급여충당부채, 연금충당부채, 보험충당부채 및 기타 장기충당부채 등을 말한다”를 “연금충당부채, 퇴직수당충당부채, 보증충당부채 및 보험충당부채, 기타 충당부채 등으로 구분한다”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기타 비유동부채)”를 “(기타부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기타 비유동부채는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및 장기충당부채”를 “기타부채는 차입부채와 충당부채”로 한다.

제23조제4항 중 “파생상품평가손익 및 기타 순자산의 증감”을 “자산재평가이익, 보험수리적손익”으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2호의2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3호의2서식”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프로그램순원가, 재정운영순원가, 재정운영결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를 “성질별 재정운영표와 프로그램별 재정운영표로 구분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성질별 재정운영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표시한다.

1. 수익 : 이전수익, 국가운영수익으로 구분하여 표시
2. 비용 : 이전비용, 국가운영비용으로 구분하여 표시

3. 재정운영결과 : 제2호에서 제1호를 빼서 표시

제2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프로그램별 재정운영표는 프로그램순원가, 재정운영순원가, 재정운영
결과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한다.

제25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
항을 삭제한다.

1. 프로그램순원가 :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하여 투입한 원가 합계에서 다른 프로그램으로부터 배부받은 원가를 더하고, 다른 프로그램에 배부한 원가는 빼며, 프로그램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등을 빼서 표시

2. 재정운영순원가 : 프로그램순원가에서 가목 및 나목의 비용은 더하고, 다목의 수익은 빼서 표시

가. 관리운영비 : 프로그램의 운영에 직접적으로 소요되지는 않으나 국가회계실체의 기본적인 기능수행 및 특정 프로그램의 행정운영과 관련된 인건비와 경비

나. 비배분비용 : 국가회계실체에서 발생한 비용 중 프로그램에 대응되지 않는 비용

다. 비배분수익 : 국가회계실체에서 발생한 수익 중 프로그램에 대응되지 않는 수익

3. 재정운영결과 : 재정운영순원가에서 비교환수익 등을 빼서 표시, 다만,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50조의2에 따라 통합 관리하는 일반

회계 및 특별회계의 자금에서 발생하는 비교환수익 등은 순자산변동
표의 재원의 조달 및 이전란에 표시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한다”를 “성질
별 재정운영표와 분야별 재정운영표로 구분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
의 제2항) 중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가의”를 “제3항에서 정한 사
항외에 분야별”로, “중앙관서 또는 기금의 재정운영표 작성”을 “중앙관
서 또는 기금의 프로그램별 재정운영표 작성”으로 한다.

② 성질별 재정운영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표시한다.

1. 수익 : 국세수익, 이전수익, 국가운영수익으로 구분하여 표시
2. 비용 : 이전비용, 국가운영비용으로 구분하여 표시
3. 재정운영결과 : 제2호에서 제1호를 빼서 표시

③ 분야별 재정운영표는 내부거래를 제거하여 작성하되, 사업순원가,
재정운영순원가 및 재정운영결과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
한다.

1. 사업순원가 : 분야별 총원가에서 분야별 수익을 빼서 표시
2. 재정운영순원가 : 사업순원가에서 관리운영비와 비배분비용은 더하
고, 비배분수익은 빼서 표시

3. 재정운영결과 : 재정운영순원가에서 비교환수익 등을 빼서 표시

제28조제2항제2호 중 “국세, 부담금, 기부금, 무상이전 및 제재금 등의

수익”을 “수익”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수익은 그 성질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세수익 : 국가의 재정수입을 위하여 국가가 징수하는 내국세와 관세 등의 수익
2. 이전수익 : 사회보험수익, 부담금수익 및 제재금수익 등 재화나 용역, 그 밖의 자산을 수취한 대가를 직접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국세수익을 제외한 수익
3. 국가운영수익 : 재화및용역제공수익, 연금수익, 이자수익, 배당수익, 자산처분이익 및 자산평가이익 등 국가의 재정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으로 국세수익, 이전수익 외의 모든 수익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식하며, 수익 유형에 따른 세부 인식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를 “인식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0조의 제목 “(비용의 정의와 인식기준)”을 “(비용의 정의와 구분)”으로 한다.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비용은 그 성질에 따라 다음 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3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이전비용 : 국고보조사업비, 출연사업비, 사회보험비용 및 지방교부금 등 재화나 용역, 그 밖의 자산을 제공한 대가를 직접적으로 수취하지 않은 거래에서 발생한 비용

2. 국가운영비용 : 재화및용역제공원가, 연금비용, 인건비, 이자비용, 운영비, 감가상각비 및 자산평가손실 등 국가의 재정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으로 이전비용 외의 모든 비용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비용의 인식기준) 재화나 용역제공 등 국가재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자산이 감소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 또는 법령 등에 따라 지출에 대한 의무가 존재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제4장의 제목 “자산과 부채의 평가”를 “현금흐름표”로 한다.

제4장에 제31조의2 및 제3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현금흐름표) ① 현금흐름표는 현금의 유입과 유출내역을 나타내는 재무제표를 말한다.

② 현금흐름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제31조의3(현금흐름표 작성기준) ① 현금흐름표 상 현금흐름은 운영활동, 투자활동 및 재무활동으로 구분하며, 이에 기초의 현금을 가산하여 기말의 현금을 산출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1. 운영활동 : 국세의 징수, 정책사업 운영 및 관리활동 등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활동
2. 투자활동 : 현금의 대여와 회수, 투자증권 및 유·무형자산 취득 및 처분활동 등
3. 재무활동 : 현금의 차입·상환 및 출연금의 증가 등 부채와 순자산

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

② 제1항제1호의 금액은 현금의 유입은 원천별로 현금의 유출은 용도별로 분류하여 총액으로 표시하는 직접법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2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자산과 부채의 평가

제32조제3항 중 “재정운영순원가”를 각각 “재정운영결과”로 한다.

제33조의 제목 “(유가증권의 평가)”를 “(투자증권의 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유가증권”을 “투자증권”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33조제3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채무증권은 상각후취득원가, 지분증권은 취득원가로 평가한다.

제33조제3항 단서 중 “다만, 투자목적의 장기투자증권 또는 단기투자증권인 경우에는”을 “다만,”으로, “순자산변동표에 조정항목으로 표시한다”를 “순자산조정에 반영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정부출자금의 평가) ① 정부출자금은 출자액 또는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하고 품목별로 총평균법 등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② 정부출자금은 취득원가로 평가한다.

제34조를 삭제한다.

제34조의2 및 제3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대여금의 평가) ① 대여금은 신뢰성 있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여 평가한다.

② 용자사업에서 발생한 대여금의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용자금원금과 추정 회수가능액의 현재가치와의 차액인 용자보조원가충당금을 설정하여 평가한다.

제34조의3(미수채권의 평가) 미수채권의 평가는 제34조의2제1항을 준용한다.

제37조제2항 중 “차감항목에 표시한다”를 “차감항목으로 한다”로 한다.

제38조제3항 중 “차감항목에 표시한다”를 “차감항목으로 한다”로 한다.

제38조의2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가액이 장부가액과 비교하여 신뢰성이 낮은 경우에는 재평가하지 아니한다.

제40조의 제목 “(일반유형자산 및 사회기반시설의 취득 후 지출)”을 “(유·무형자산의 취득 후 지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일반유형자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유·무형자산”으로 한다.

제42조의 제목 “(국채의 평가)”를 “(국채 및 공채의 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차이는 국채할인(할증)발행차금 과목으로 액면가액에 빼거나 더하는 형식으로 표시하며, 그”를 “차이인”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공채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44조의 제목 “(연금충당부채 및 보험충당부채의 평가)”를 “(연금충당부채 및 퇴직수당충당부채의 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연금충당부채는 연금추정지급액 중 재정상태표일 현재의 재직기간까지 귀속되는 금액을 현재가치로 산정하여 평가한다.

② 제1항의 연금추정지급액이란 재정상태표일 현재의 연금가입자에게 근무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장래 예상퇴직시점에 지급하여야 할 금액으로, 예상퇴직시점의 장래 추정정보수와 전체 추정근무기간 등 보험수리적 가정을 반영하여 산정한 것을 말한다.

③ 퇴직수당충당부채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연금충당부채 및 퇴직수당충당부채의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보험충당부채 평가) ① 재정상태표일 이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나 미지급된 보험금 지급예상액과 재정상태표일 현재 보험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장래 발생할 보험사고를 대비하여 적립하는 지급예상액으로 평가한다.

② 관련 법령에 의한 적립금과 준비금 산정 방식이 제1항의 산정방식과 유사한 경우 그 적립금과 준비금을 보험충당부채로 볼 수 있다. 다만, 미경과보험료적립금은 제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험충당부채의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5조의 제목 “(융자보조원가충당금과 보증충당부채의 평가)”를 “(보증충당부채의 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2항”으로, “융자보조원가충당금 및 보증충당부채”를 “보증충당부채”로 한다.

제47조제3항 중 “재정운영순원가”를 “재정운영결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조정항목에 반영하는”을 “순자산조정에 반영하는”으로, “조정항목에 반영하고, 재정운영순원가”를 “순자산조정에 반영하고, 재정운영결과”로, “재정운영순원가에 반영한다”를 “재정운영결과에 반영한다”로 한다.

제49조제2항 본문 중 “재정운영순원가”를 “재정운영결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순자산변동표의 조정항목 중 파생상품평가손익으로 표시한다”를 “순자산변동표의 조정항목으로 한다”로 한다.

제52조 앞에 “제5장 순자산변동표”를 삭제한다.

제52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 순자산변동표

제54조 앞에 “제6장 필수보충정보, 주식 및 부속명세서 등”을 삭제한다.

제54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장 주식

제54조를 삭제한다.

제5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 규칙에서 규정한 주식 사항 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을 “다음”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작성기준과”를 “종류, 작성기준 및”으로 한다.

1.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회계처리에 적용한 회계정책
2. 이 규칙에서 주식 공시를 요구하는 사항
3.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및 현금흐름표의 본문에 표시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추가 정보

제56조를 삭제한다.

제57조 앞에 “제7장 보칙”을 삭제한다.

제57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장 보칙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25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제3조(현금흐름표 작성에 관한 특례) 2025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는 제6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재정상태표

당기: 20XY년 12월 31일 현재

전기: 20XX년 12월 31일 현재

00기금, 00부처, 대한민국 정부

(단위:)

주석		20XY	20XX
자산			
I. 금융자산		XXX	XXX
1. 현금및현금성자산	X	XXX	XXX
2. 금융상품	X	XXX	XXX
3. 투자증권	X	XXX	XXX
4. 정부출자금	X	XXX	XXX
5. 대여금	X	XXX	XXX
6. 미수채권	X	XXX	XXX
7. 기타금융자산	X	XXX	XXX
II. 유·무형자산		XXX	XXX
1. 일반유형자산	X	XXX	XXX
2. 사회기반시설	X	XXX	XXX
3. 무형자산	X	XXX	
III. 기타자산		XXX	XXX
자산계		XXX	XXX
부채			
I. 차입부채		XXX	XXX
1. 국채	X	XXX	XXX
2. 차입금	X	XXX	XXX
3. 국고채무부담행위액	X	XXX	XXX
4. 기타차입부채	X	XXX	XXX
II. 충당부채		XXX	XXX
1. 연금충당부채	X	XXX	XXX
2. 퇴직수당충당부채	X	XXX	XXX

3. 보증충당부채	X	XXX	XXX
4. 보험충당부채	X	XXX	XXX
5. 기타충당부채	X	XXX	XXX
Ⅲ. 기타부채		<u>XXX</u>	<u>XXX</u>
부채계		<u>XXX</u>	<u>XXX</u>
순자산			
Ⅰ. 기본순자산		XXX	XXX
Ⅱ. 적립금 및 잉여금		XXX	XXX
Ⅲ. 순자산조정		XXX	XXX
순자산계		<u>XXX</u>	<u>XXX</u>
부채와순자산계		<u>XXX</u>	<u>XXX</u>

210mmX297mm(백상지(120g/㎡)또는 백상지(80g/㎡))

프로그램별 재정운영표

당기: 20XY년 1월 1일부터 20XY년 12월 31일까지

전기: 20XX년 1월 1일부터 20XX년 12월 31일까지

00기금, 00부처

(단위:)

	주석	20XY			20XX		
		총원가	수익	순원가	총원가	수익	순원가
I. 프로그램순원가	X	XXX	(XXX)	XXX	XXX	(XXX)	XXX
1. 프로그램(A)		XXX	(XXX)	XXX	XXX	(XXX)	XXX
2. 프로그램(B)		XXX	(XXX)	XXX	XXX	(XXX)	XXX
3. 프로그램(C)		XXX	(XXX)	XXX	XXX	(XXX)	XXX
4. 프로그램(D)		XXX	(XXX)	XXX	XXX	(XXX)	XXX
5. ...		XXX	(XXX)	XXX	XXX	(XXX)	XXX
II. 관리운영비	X			XXX			XXX
III. 비배분비용	X			XXX			XXX
IV. 비배분수익	X			XXX			XXX
V. 재정운영순원가 (I + II + III - IV)				XXX			XXX
VI. 비교환수익 등				XXX			XXX
1. 사회보험수익	X			XXX			XXX
2. 부담금수익	X			XXX			XXX
3. 제재금수익	X			XXX			XXX
4. 기타이전수익 등	X			XXX			XXX
VII. 재정운영결과 (V - VI)				XXX			XXX

210mmX297mm(백상지(120g/㎡)또는 백상지(80g/㎡))

■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

성질별 재정운영표

당기: 20XY년 1월 1일부터 20XY년 12월 31일까지

전기: 20XX년 1월 1일부터 20XX년 12월 31일까지

00기금, 00부처

(단위:

)

	주석	20XY	20XX
수익(I + II)		XXX	XXX
I. 이전수익		XXX	XXX
1. 사회보험수익	X	XXX	XXX
2. 부담금수익	X	XXX	XXX
3. 제재금수익	X	XXX	XXX
4. 기타이전수익	X	XXX	XXX
II. 국가운영수익		XXX	XXX
1. 재화및용역제공수익	X	XXX	XXX
2. 연금수익	X	XXX	XXX
3. 이자수익	X	XXX	XXX
4. 배당수익	X	XXX	XXX
5. 자산처분이익	X	XXX	XXX
6. 자산평가이익	X	XXX	XXX
7. 기타국가운영수익	X	XXX	XXX
비용(III + IV)		XXX	XXX
III. 이전비용		XXX	XXX
1. 국고보조사업비	X	XXX	XXX
2. 출연사업비	X	XXX	XXX
3. 사회보험비용	X	XXX	XXX
4. 지방교부금	X	XXX	XXX
5. 기타이전비용	X	XXX	XXX
IV. 국가운영비용		XXX	XXX
1. 재화및용역제공원가	X	XXX	XXX
2. 연금비용	X	XXX	XXX
3. 인건비	X	XXX	XXX
4. 이자비용	X	XXX	XXX
5. 운영비	X	XXX	XXX

6. 감가상각비	X	XXX	XXX
7. 자산평가손실	X	XXX	XXX
8. 기타국가운영비용	X	XXX	XXX
재정운영결과 (비용-수익)		<u>XXX</u>	<u>XXX</u>

210mmX297mm(백상지(120g/㎡)또는 백상지(80g/㎡))

분야별 재정운영표

당기: 20XY년 1월 1일부터 20XY년 12월 31일까지

전기: 20XX년 1월 1일부터 20XX년 12월 31일까지

대한민국 정부

(단위:)

	주석	20XY			20XX		
		총원가	수익	순원가	총원가	수익	순원가
I. 사업순원가	X	XXX	(XXX)	XXX	XXX	(XXX)	XXX
1. 분야(A)		XXX	(XXX)	XXX	XXX	(XXX)	XXX
2. 분야(B)		XXX	(XXX)	XXX	XXX	(XXX)	XXX
3. 분야(C)		XXX	(XXX)	XXX	XXX	(XXX)	XXX
4. 분야(D)		XXX	(XXX)	XXX	XXX	(XXX)	XXX
5. ...		XXX	(XXX)	XXX	XXX	(XXX)	XXX
II. 관리운영비	X			XXX			XXX
III. 비배분비용	X			XXX			XXX
IV. 비배분수익	X			XXX			XXX
V. 재정운영순원가 (I+II+III-IV)				XXX			XXX
VI. 비교환수익 등				XXX			XXX
1. 국세수익	X			XXX			XXX
2. 사회보험수익	X			XXX			XXX
3. 부담금수익	X			XXX			XXX
4. 제재금수익	X			XXX			XXX
5. 기타이전수익 등	X			XXX			XXX
VII. 재정운영결과 (V-VI)				XXX			XXX

210mmX297mm(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

성질별 재정운영표

당기: 20XY년 1월 1일부터 20XY년 12월 31일까지

전기: 20XX년 1월 1일부터 20XX년 12월 31일까지

대한민국 정부

(단위:

	주석	20XY	20XX
수익(Ⅰ+Ⅱ+Ⅲ)		XXX	XXX
Ⅰ. 국세수익	<i>X</i>	XXX	XXX
Ⅱ. 이전수익		XXX	XXX
1. 사회보험수익	<i>X</i>	XXX	XXX
2. 부담금수익	<i>X</i>	XXX	XXX
3. 제재금수익	<i>X</i>	XXX	XXX
4. 기타이전수익	<i>X</i>	XXX	XXX
Ⅲ. 국가운영수익		XXX	XXX
1. 재화및용역제공수익	<i>X</i>	XXX	XXX
2. 연금수익	<i>X</i>	XXX	XXX
3. 이자수익	<i>X</i>	XXX	XXX
4. 배당수익	<i>X</i>	XXX	XXX
5. 자산처분이익	<i>X</i>	XXX	XXX
6. 자산평가이익	<i>X</i>	XXX	XXX
7. 기타국가운영수익	<i>X</i>	XXX	XXX
비용(Ⅳ+Ⅴ)		XXX	XXX
Ⅳ. 이전비용		XXX	XXX
1. 국고보조사업비	<i>X</i>	XXX	XXX
2. 출연사업비	<i>X</i>	XXX	XXX
3. 사회보험비용	<i>X</i>	XXX	XXX
4. 지방교부금	<i>X</i>	XXX	XXX
5. 기타이전비용	<i>X</i>	XXX	XXX
Ⅴ. 국가운영비용		XXX	XXX
1. 재화및용역제공원가	<i>X</i>	XXX	XXX
2. 연금비용	<i>X</i>	XXX	XXX
3. 인건비	<i>X</i>	XXX	XXX
4. 이자비용	<i>X</i>	XXX	XXX
5. 운영비	<i>X</i>	XXX	XXX
6. 감가상각비	<i>X</i>	XXX	XXX
7. 자산평가손실	<i>X</i>	XXX	XXX
8. 기타국가운영비용	<i>X</i>	XXX	XXX
재정운영결과 (비용-수익)		XXX	XXX

210mmX297mm(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

■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별지 제4호서식]

순자산변동표

당기: 20XY년 1월 1일부터 20XY년 12월 31일까지 (Ⅵ.~Ⅹ.)

전기: 20XX년 1월 1일부터 20XX년 12월 31일까지 (Ⅰ.~Ⅴ.)

OO기금, OO부처

(단위:)

	주식	기본 순자산	적립금 및 잉여금	순자산 조정	합계
Ⅰ. 전기 기초순자산		XXX	XXX	XXX	XXX
1. 보고금액		XXX	XXX	XXX	XXX
2. 전기오류수정손익	X	XXX	XXX	XXX	XXX
3. 회계변경누적효과	X	XXX	XXX	XXX	XXX
Ⅱ. 재정운영결과			XXX		XXX
Ⅲ. 재원의 조달 및 이전			XXX		XXX
1. 재원의 조달			XXX		XXX
(1) 국고수입			XXX		XXX
(2) 사회보험수익			XXX		XXX
(3) 부담금수익			XXX		XXX
(4) 제재금수익			XXX		XXX
(5) 기타이전수익			XXX		XXX
2. 재원의 이전			XXX		XXX
(1) 국고이전지출			XXX		XXX
(2) 기타이전비용			XXX		XXX
Ⅳ. 조정항목		XXX	XXX	XXX	XXX
1. 투자증권평가손익	X	-	-	XXX	XXX
2. 자산재평가이익	X	-	-	XXX	XXX
3. 보험수리적손익	X	-	XXX	-	XXX
4. 기타순자산의증감	X	XXX	XXX	XXX	XXX
5. ...	X	XXX	XXX	XXX	XXX
Ⅴ. 전기 기말순자산(Ⅰ-Ⅱ+Ⅲ+Ⅳ)		XXX	XXX	XXX	XXX

Ⅴ. 당기 기초순자산		XXX	XXX	XXX	XXX
1. 보고금액		XXX	XXX	XXX	XXX
2. 전기오류수정손익	X	XXX	XXX	XXX	XXX
3. 회계변경누적효과	X	XXX	XXX	XXX	XXX
Ⅵ. 재정운영결과			XXX		XXX
Ⅶ. 재원의 조달 및 이전			XXX		XXX
1. 재원의 조달			XXX		XXX
(1) 국고수입			XXX		XXX
(2) 사회보험수익			XXX		XXX
(3) 부담금수익			XXX		XXX
(4) 제재금수익			XXX		XXX
(5) 기타이전수익			XXX		XXX
2. 재원의 이전			XXX		XXX
(1) 국고이전지출			XXX		XXX
(2) 기타이전비용			XXX		XXX
Ⅷ. 조정항목		XXX	XXX	XXX	XXX
1. 투자증권평가손익	X	-	-	XXX	XXX
2. 자산재평가이익	X	-	-	XXX	XXX
3. 보험수리적손익	X	-	XXX	-	XXX
4. 기타순자산의증감	X	XXX	XXX	XXX	XXX
5. ...	X	XXX	XXX	XXX	XXX
X. 당기 기말순자산(Ⅴ-Ⅵ+Ⅶ+Ⅷ)		XXX	XXX	XXX	XXX

210mmX297mm(백상지(120g/㎡)또는 백상지(80g/㎡))

순자산변동표

당기: 20XY년 1월 1일부터 20XY년 12월 31일까지 (Ⅴ.~Ⅷ.)

전기: 20XX년 1월 1일부터 20XX년 12월 31일까지 (Ⅰ.~Ⅳ.)

대한민국 정부

(단위:)

	주식	기본 순자산	적립금 및 잉여금	순자산 조정	합계
Ⅰ. 전기 기초순자산		XXX	XXX	XXX	XXX
1. 보고금액		XXX	XXX	XXX	XXX
2. 전기오류수정손익	X	XXX	XXX	XXX	XXX
3. 회계변경누적효과	X	XXX	XXX	XXX	XXX
Ⅱ. 재정운영결과			XXX		XXX
Ⅲ. 조정항목		XXX	XXX	XXX	XXX
1. 투자증권평가손익	X	-	-	XXX	XXX
2. 자산재평가이익	X	-	-	XXX	XXX
3. 보험수리적손익	X	-	XXX	-	XXX
4. 기타순자산의증감	X	XXX	XXX	XXX	XXX
5. ...	X	XXX	XXX	XXX	XXX
Ⅳ. 전기 기말순자산(Ⅰ - Ⅱ + Ⅲ)		XXX	XXX	XXX	XXX
Ⅴ. 당기 기초순자산		XXX	XXX	XXX	XXX
1. 보고금액		XXX	XXX	XXX	XXX
2. 전기오류수정손익	X	XXX	XXX	XXX	XXX
3. 회계변경누적효과	X	XXX	XXX	XXX	XXX
Ⅵ. 재정운영결과			XXX		XXX
Ⅶ. 조정항목		XXX	XXX	XXX	XXX
1. 투자증권평가손익	X	-	-	XXX	XXX
2. 자산재평가이익	X	-	-	XXX	XXX
3. 보험수리적손익	X	-	XXX	-	XXX
4. 기타순자산의증감	X	XXX	XXX	XXX	XXX
5. ...	X	XXX	XXX	XXX	XXX
Ⅷ. 당기 기말순자산(Ⅴ - Ⅵ + Ⅶ)		XXX	XXX	XXX	XXX

현금흐름표

당기: 20XY년 1월 1일부터 20XY년 12월 31일까지

전기: 20XX년 1월 1일부터 20XX년 12월 31일까지

00기금, 00부처, 대한민국 정부

(단위:)

	주석	20XY	20XX
I. 운영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i>X</i>	XXX	XXX
1. 운영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		XXX	XXX
(1) 국세수입		XXX	XXX
(2) 사회보험수입		XXX	XXX
(3) 부담금·제재금수입		XXX	XXX
(4) 이자수입		XXX	XXX
...			
2. 운영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			
(1) 보조금 지급		XXX	XXX
(2) 출연금 지급		XXX	XXX
(3) 지방교부금 지급		XXX	XXX
(4) 사회보험지출		XXX	XXX
(5) 인건비 지급			
(6) 이자지급			
...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i>X</i>	XXX	XXX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		XXX	XXX
(1) 금융상품, 투자증권 처분		XXX	XXX
(2) 일반유형자산, 사회기반시설 처분		XXX	XXX
(3) 대여금 회수		XXX	XXX
(4) 무형자산 처분		XXX	XXX
...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		XXX	XXX
(1) 금융상품, 투자증권 취득		XXX	XXX
(2) 일반유형자산, 사회기반시설 취득		XXX	XXX
(3) 대여금 지급		XXX	XXX
(4) 무형자산 취득		XXX	XXX
...			

Ⅲ.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i>X</i>	XXX	XXX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		XXX	XXX
(1) 국공채 발행		XXX	XXX
(2) 차입금 차입		XXX	XXX
...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		XXX	XXX
(1) 국공채 상환		XXX	XXX
(2) 차입금 상환		XXX	XXX
...			
Ⅳ. 현금의 증감(Ⅰ + Ⅱ + Ⅲ)		XXX	XXX
Ⅴ. 기초의 현금		XXX	XXX
Ⅵ. 기말의 현금(Ⅳ + Ⅴ)		XXX	XXX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재무제표와 부속서류) ① 재무제표는 「국가회계법」 제14조제3호에 따라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로 구성하되,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포함한다.	제5조(재무제표) ① ----- ----- ----- ----- 순자산변동표 및 현금흐름표 ----- -----.
② 재무제표의 부속서류는 필수보충정보와 부속명세서로 한다.	<삭 제>
③ · ④ (생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8조(재정상태표 작성기준) ①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높은 항목부터 배열한다. 이 경우 유동성이란 현금으로 전환되기 쉬운 정도를 말한다.	제8조(재정상태표 작성기준) ① 자산과 부채는 업무의 특성, 유동성, 중요도 등을 감안하여 배열한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자산의 정의와 구분) ① (생략)	제9조(자산의 정의와 구분) ① (현행과 같음)
② 자산은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사회기반시설, 무형자산 및 기타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하여 재정상태표에 표시한다.	② ----- 금융자산, 유·무형자산 및 기타자산----- ----- ----- -----.
제10조(자산의 인식기준) ① (생략)	제10조(자산의 인식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하여 정부가 영구히 보존하여야 할 자산으로서 역사적, 자연적, 문화적, 교육적 및 예술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갖는 자산(이하 “유산자산”이라 한다)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그 종류와 현황 등을 필수보충정보로 공시한다.

③ (생략)

제11조(유동자산) ① 유동자산은 재정상태표일부터 1년 이내에 현금화되거나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으로서, 현금 및 현금성자산, 단기금융상품, 단기투자증권, 미수채권, 단기대여금 및 기타 유동자산 등을 말한다.

② 제1항의 단기투자증권은 만기가 1년 이내이거나 1년 이내에 처분 예정인 채무증권, 지분증권 및 기타 단기투자증권을 말하고, 같은 항의 기타 유동자산은 미수수익, 선급금, 선급비용 및 재고자산 등을 말한다.

제12조(투자자산) ① 투자자산은

② -----

----- 주식 -----
-----.

③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투자 또는 권리행사 등의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으로서, 장기금융상품, 장기투자증권, 장기대여금 및 기타 투자자산 등을 말한다.

② 제1항의 장기투자증권은 만기가 1년 후이거나 1년 후에 처분 예정인 채무증권, 지분증권 및 기타 장기투자증권을 말한다.

<신 설>

제13조(일반유형자산) ① 일반유형자산은 고유한 행정활동에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제14조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은 제외한다)으로서,

제12조의2(금융자산) ① 금융자산은 현금, 소유지분에 대한 증서 및 현금(또는 다른 금융자산)을 수취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금융자산을 교환할 수 있는 계약상의 권리를 말한다.

② 제1항의 금융자산은 현금및 현금성자산, 금융상품, 투자증권, 정부출자금, 대여금, 미수채권, 기타금융자산으로 구분한다.

<삭 제>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집기·비품·차량운반구, 전비품, 기타 일반유형자산 및 건설 중인 일반유형자산 등을 말한다.

② 제1항의 전비품은 전쟁의 억제 또는 수행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전문적인 군사장비와 탄약 등을 말한다.

제14조(사회기반시설) 사회기반시설은 국가의 기반을 형성하기 위하여 대규모로 투자하여 건설하고 그 경제적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자산으로서, 도로, 철도, 항만, 댐, 공항, 하천, 상수도, 국가어항, 기타 사회기반시설 및 건설 중인 사회기반시설 등을 말한다.

제15조(무형자산) 무형자산은 일정 기간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자산으로서, 산업재산권, 광업권, 소프트웨어, 기타 무형자산 등을 말한다.

<신 설>

<삭 제>

<삭 제>

제15조의2(유·무형자산) ① 유·무형자산은 일반유형자산, 사회

	<u>기반시설 및 무형자산으로 구분한다.</u> <u>② 일반유형자산은 고유한 행정 활동에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제3항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은 제외한다)을 말한다.</u> <u>③ 사회기반시설은 국가의 기반을 형성하기 위하여 대규모로 투자하여 건설하고 그 경제적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자산을 말한다.</u> <u>④ 무형자산은 물리적 실체가 없지만 식별할 수 있고, 국가회계실체가 통제하고 있어 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자산을 말한다.</u>
제16조(<u>기타 비유동자산</u>) <u>기타 비유동자산은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사회기반시설 및 무형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을 말한다.</u>	제16조(<u>기타자산</u>) <u>기타자산은 금융자산과 유·무형자산-----</u> ----- ----- -----.
제17조(<u>부채의 정의와 구분</u>) ① (생략)	제17조(<u>부채의 정의와 구분</u>) ① (현행과 같음)
② 부채는 <u>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장기충당부채 및 기타 비</u>	② ----- <u>차입부채, 충당부채 및 기타부채-----</u>

유동부채로 구분하여 재정상태표에 표시한다.

제19조(유동부채) ① 유동부채는 재정상태표일부터 1년 이내에 상환하여야 하는 부채로서 단기국채, 단기공채,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및 기타 유동부채 등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기타 유동부채는 미지급금, 미지급비용, 선수금, 선수수익 등을 말한다.

제20조(장기차입부채) 장기차입부채는 재정상태표일부터 1년 후에 만기가 되는 확정부채로서 국채, 공채, 장기차입금 및 기타 장기차입부채 등을 말한다.

<신 설>

제21조(장기충당부채) 장기충당부채는 지출시기 또는 지출금액이 불확실한 부채로서 퇴직급여충

-----.

<삭 제>

<삭 제>

제20조의2(차입부채) 차입부채는 현금(또는 다른 금융자산)을 지급하거나 불리한 조건으로 금융자산을 교환해야하는 계약상의 의무로 국채, 차입금, 국고채무 부담행위액 및 기타차입부채로 구분한다.

제21조(충당부채) 충당부채는 --

----- 연금충당부

당부채, 연금충당부채, 보험충당부채 및 기타 장기충당부채 등을 말한다.

제22조(기타 비유동부채) 기타 비유동부채는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및 장기충당부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채를 말한다.

제23조(순자산의 정의와 구분) ① ~ ③ (생략)
④ 순자산조정은 투자증권평가손익, 파생상품평가손익 및 기타 순자산의 증감 등을 표시한다.

제24조(재정운영표) ① (생략)
② 중앙관서 또는 기금의 재정운영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③ 국가의 재정운영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25조(중앙관서 또는 기금의 재정운영표) ① 중앙관서 또는 기금의 재정운영표는 프로그램순원가, 재정운영순원가, 재정운

채, 퇴직수당충당부채, 보증충당부채 및 보험충당부채, 기타 충당부채 등으로 구분한다.

제22조(기타부채) 기타부채는 차입부채와 충당부채-----
-----.

제23조(순자산의 정의와 구분)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자산재평가이익, 보험수리적손익 -----
--.

제24조(재정운영표) ① (현행과 같음)
② -----
-----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2호의2서식-----
-----.
③ -----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3호의2서식-----.

제25조(중앙관서 또는 기금의 재정운영표) ① -----
----- 성질별 재정운영표와 프로그램별 재정운영

영결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② 프로그램순원가는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하여 투입한 원가 합계에서 다른 프로그램으로부터 배부받은 원가를 더하고, 다른 프로그램에 배부한 원가는 빼며, 프로그램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등을 빼서 표시한다.

③ 재정운영순원가는 프로그램순원가에서 제1호 및 제2호의 비용은 더하고, 제3호의 수익은 빼서 표시한다.

1. 관리운영비: 기관운영비와 같이 기관의 여러 정책이나 사업, 활동을 지원하는 비용 (「정부기업예산법」 제3조에 따른 특별회계나 기금의 경우에는 관리업무비를 말한다)

2. 비배분비용: 국가회계실체에서 발생한 비용 중 프로그램에 대응되지 않는 비용

표로 구분한다.

② 성질별 재정운영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표시한다.

1. 수익 : 이전수익, 국가운영수익으로 구분하여 표시

2. 비용 : 이전비용, 국가운영비용으로 구분하여 표시

3. 재정운영결과 : 제2호에서 제1호를 빼서 표시

③ 프로그램별 재정운영표는 프로그램순원가, 재정운영순원가, 재정운영결과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한다.

1. 프로그램순원가 :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하여 투입한 원가 합계에서 다른 프로그램으로부터 배부받은 원가를 더하고, 다른 프로그램에 배부한 원가는 빼며, 프로그램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등을 빼서 표시

2. 재정운영순원가 : 프로그램순원가에서 가목 및 나목의 비용은 더하고, 다목의 수익은 빼서 표시

3. 비배분수익: 국가회계실체에서 발생한 수익 중 프로그램에 대응되지 않는 수익

④ 재정운영결과는 재정운영순원가에서 비교환수익(제28조제2항제2호의 비교환수익을 말한

가. 관리운영비 : 프로그램의 운영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않으나 국가회계실체의 기본적인 기능수행 및 특정 프로그램의 행정운영과 관련된 인건비와 경비

나. 비배분비용 : 국가회계실체에서 발생한 비용 중 프로그램에 대응되지 않는 비용

다. 비배분수익 : 국가회계실체에서 발생한 수익 중 프로그램에 대응되지 않는 수익

3. 재정운영결과 : 재정운영순원가에서 비교환수익 등을 빼서 표시, 다만,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50조의2에 따라 통합 관리하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자금에서 발생하는 비교환수익 등은 순자산변동표의 재원의 조달 및 이전란에 표시한다.

<삭 제>

다. 이하 같다) 등을 빼서 표시한다. 다만,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50조의2에 따라 통합 관리하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자금에서 발생하는 비교환수익 등은 순자산변동표의 재원의 조달 및 이전란에 표시한다.

제26조(국가의 재정운영표) ① 중앙관서 또는 기금의 재정운영표를 통합하여 작성하는 국가의 재정운영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한다.

1. 재정운영표: 내부거래를 제거하여 작성하되 재정운영순원가, 비교환수익 등 및 재정운영결과로 구분하여 표시
2. 재정운영순원가: 각 중앙관서별로 구분하여 표시
3. 재정운영결과: 재정운영순원가에서 비교환수익 등을 빼서 표시

<신 설>

제26조(국가의 재정운영표) ① --

----- 성질별 재정운영표와 분야별 재정운영표로 구분한다.

<삭 제>

<삭 제>

<삭 제>

② 성질별 재정운영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표시한다.

1. 수익 : 국세수익, 이전수익,

<신 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가의 재정운영표 작성 방법은 중앙관서 또는 기금의 재정운영표 작성 방법을 준용한다.

제28조(수익의 정의와 구분) ①

국가운영수익으로 구분하여 표시

2. 비용 : 이전비용, 국가운영비용으로 구분하여 표시

3. 재정운영결과 : 제2호에서 제1호를 빼서 표시

③ 분야별 재정운영표는 내부거래를 제거하여 작성하되, 사업순원가, 재정운영순원가 및 재정운영결과로 구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표시한다.

1. 사업순원가 : 분야별 총원가에서 분야별 수익을 빼서 표시

2. 재정운영순원가 : 사업순원가에서 관리운영비와 비배분비용은 더하고, 비배분수익은 빼서 표시

3. 재정운영결과 : 재정운영순원가에서 비교환수익 등을 빼서 표시

④ 제3항에서 정한 사항외에 분야별 ----- 중앙관서 또는 기금의 프로그램별 재정운영표 작성 --.

제28조(수익의 정의와 구분) ①

(생략)

② 수익은 그 원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생략)

2. 비교환수익: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발생하는 국세, 부담금, 기부금, 무상이전 및 제재금 등의 수익

<신설>

(현행과 같음)

② -----
-----.

1. (현행과 같음)

2. -----
----- 수익

③ 수익은 그 성질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세수익 : 국가의 재정수입을 위하여 국가가 징수하는 내국세와 관세 등의 수익

2. 이전수익 : 사회보험수익, 부담금수익 및 제재금수익 등 재화나 용역, 그 밖의 자산을 수취한 대가를 직접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국세수익을 제외한 수익

3. 국가운영수익 : 재화및용역제공수익, 연금수익, 이자수익, 배당수익, 자산처분이익 및 자산평가이익 등 국가의 재정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으로 국세수익, 이전수익 외의

	<u>모든 수익</u>
제29조(수익의 인식기준) ① (생략)	제29조(수익의 인식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비교환수익은 해당 수익에 대한 청구권이 발생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에 <u>인식하며, 수익 유형에 따른 세부 인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u>	② ----- ----- ----- ----- <u>인식한다.</u>
1. <u>신고·납부하는 방식의 국세:</u> <u>납세의무자가 세액을 자진신고하는 때에 수익으로 인식</u>	<u><삭 제></u>
2. <u>정부가 부과하는 방식의 국세:</u> <u>국가가 고지하는 때에 수익으로 인식</u>	<u><삭 제></u>
3. <u>원천징수하는 국세:</u> <u>원천징수 의무자가 원천징수한 금액을 신고·납부하는 때에 수익으로 인식</u>	<u><삭 제></u>
4. <u>연부연납(세금 신고기한 경과 후 장기간 분할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분납이 가능한 국세:</u> <u>징수할 세금이 확정된 때에 그 납부할 세액 전체를 수익으로 인식</u>	<u><삭 제></u>
5. <u>부담금수익, 기부금수익, 무</u>	<u><삭 제></u>

상이전수입, 제재금수익 등:
청구권 등이 확정된 때에 그
확정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
 다만, 제재금수익 중 벌금, 과
 료, 범칙금 또는 몰수품으로서
청구권이 확정된 때나 몰수품
을 몰수한 때에 그 금액을 확
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벌금,
과료 또는 범칙금이 납부되거
나 몰수품이 처분된 때에 수
익으로 인식할 수 있다.

제30조(비용의 정의와 인식기준)

① (생략)

②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1. 재화나 용역의 제공 등 국가
재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자산
이 감소하고 그 금액을 합리
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 또
는 법령 등에 따라 지출에 대
한 의무가 존재하고 그 금액
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
을 때에 비용으로 인식

2. 과거에 자산으로 인식한 자
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이 감
소 또는 소멸하거나 자원의

제30조(비용의 정의와 구분) ①

(현행과 같음)

② 비용은 그 성질에 따라 다음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이전비용 : 국고보조사업비,
출연사업비, 사회보험비용 및
지방교부금 등 재화나 용역,
그 밖의 자산을 제공한 대가
를 직접적으로 수취하지 않은
거래에서 발생한 비용

2. 국가운영비용 : 재화및용역제
공원가, 연금비용, 인건비, 이
자비용, 운영비, 감가상각비

지출 없이 부채가 발생 또는
증가한 것이 명백한 때에 비
용으로 인식

<신 설>

제4장 자산과 부채의 평가

<신 설>

<신 설>

<신 설>

및 자산평가손실 등 국가의
재정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
는 비용으로 이전비용 외의
모든 비용

제30조의2(비용의 인식기준) 재화
나 용역제공 등 국가재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자산이 감소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 또는 법령 등에 따
라 지출에 대한 의무가 존재하
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
할 수 있을 때에 비용으로 인식
한다.

<삭 제>

제4장 현금흐름표

제31조의2(현금흐름표) ① 현금흐
름표는 현금의 유입과 유출내역
을 나타내는 재무제표를 말한
다.

② 현금흐름표는 별지 제6호서
식과 같다.

제31조의3(현금흐름표 작성기준)

① 현금흐름표 상 현금흐름은
운영활동, 투자활동 및 재무활
동으로 구분하며, 이에 기초의
현금을 가산하여 기말의 현금을

산출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1. 운영활동 : 국세의 징수, 정책 사업 운영 및 관리활동 등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활동

2. 투자활동 : 현금의 대여와 회수, 투자증권 및 유·무형자산 취득 및 처분활동 등

3. 재무활동 : 현금의 차입·상환 및 출연금의 증가 등 부채와 순자산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

② 제1항제1호의 금액은 현금의 유입은 원천별로 현금의 유출은 용도별로 분류하여 총액으로 표시하는 직접법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장 자산과 부채의 평가

<신 설>

제32조(자산의 평가기준) ①·② (생략)

③ 재정상태표에 표시하는 자산은 이 규칙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산의 물리적인 손상 또는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으로 해당 자산의 회수 가능가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

제32조(자산의 평가기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고 그 미달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장부가액에서 직접 빼서 회수가능가액으로 조정하고, 장부가액과 회수가능가액의 차액을 그 자산에 대한 감액손실의 과목으로 재정운영순원가에 반영하며 감액명세를 주석으로 표시한다. 다만, 감액한 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이 차기 이후에 해당 자산이 감액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의 장부가액 이상으로 회복되는 경우에는 그 장부가액을 한도로 하여 그 자산에 대한 감액손실환입 과목으로 재정운영순원가에 반영한다.

④ (생략)

제33조(유가증권의 평가) ① 유가증권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하고 종목별로 총평균법 등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② 유가증권은 자산의 분류기준에 따라 단기투자증권과 장기투자증권으로 구분한다.

③ 채무증권은 상각후취득원가로 평가하고 지분증권과 기타

----- 재정운영결과 -----

----- 재정운영결과 -----

④ (현행과 같음)

제33조(투자증권의 평가) ① 투자증권-----

<삭제>

③ 채무증권은 상각후취득원가, 지분증권은 취득원가로 평가한

장기투자증권 및 기타 단기투자
증권은 취득원가로 평가한다.
다만, 투자목적의 장기투자증권
또는 단기투자증권인 경우에는
재정상태표일 현재 신뢰성 있게
공정가액을 측정할 수 있으면
그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며, 장
부가액과 공정가액의 차이금액
은 순자산변동표에 조정항목으
로 표시한다.

④ 유가증권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 미만으로 하락하고 그
하락이 장기간 계속되어 회복될
가능성이 없을 경우에는 장부가
액과의 차액을 감액손실로 인식
하고 재정운영순원가에 반영한
다.

<신 설>

제34조(미수채권 등의 평가) 미수

다. 다만, -----

-- 순자산조정에 반영한다.

<삭 제>

제33조의2(정부출자금의 평가) ①
정부출자금은 출자액 또는 매입
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하고 품목
별로 총평균법 등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취득원가로 한
다.

② 정부출자금은 취득원가로 평
가한다.

<삭 제>

채권, 장기대여금 또는 단기대
여금은 신뢰성 있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
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여 평
가한다.

<신 설>

<신 설>

제37조(일반유형자산의 평가) ①
(생 략)
② 일반유형자산에 대한 사용수
익권은 해당 자산의 차감항목에
표시한다.

제38조(사회기반시설의 평가) ①
· ② (생 략)

제34조의2(대여금의 평가) ① 대
여금은 신뢰성 있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
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여 평
가한다.

② 용자사업에서 발생한 대여금
의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용
자금원금과 추정 회수가능액의
현재가치와의 차액인 용자보조
원가충당금을 설정하여 평가한
다.

제34조의3(미수채권의 평가) 미수
채권의 평가는 제34조의2제1항
을 준용한다.

제37조(일반유형자산의 평가) ①
(현행과 같음)
② -----
----- 차감항목으
로 한다.

제38조(사회기반시설의 평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해당 자산의 차감항목에 표시한다.

제38조의2(일반유형자산 및 사회기반시설의 재평가 기준) ① (생략)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재평가의 최초평가연도, 평가방법 및 요건 등 세부회계처리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제40조(일반유형자산 및 사회기반시설의 취득 후 지출) 일반유형자산 및 사회기반시설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은 자산의 증가로 회계처리하고, 원상회복시키거나 능률유지를 위한 지출은 비용으로 회계처리한다.

제42조(국채의 평가) ① (생략)

② 국채의 액면가액과 발행가액의 차이는 국채할인(할증)발행

③ -----
----- 차감항목으로 한다.

제38조의2(일반유형자산 및 사회기반시설의 재평가 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가액이 장부가액과 비교하여 신뢰성이 낮은 경우에는 재평가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

제40조(유·무형자산의 취득 후 지출) 유·무형자산-----

-----.

제42조(국채 및 공채의 평가) ① (현행과 같음)

② -----
-- 차이인 -----

차금 과목으로 액면가액에 빼거나 더하는 형식으로 표시하며, 그 할인(할증)발행차금은 발행한 때부터 최종 상환할 때까지의 기간에 유효이자율로 상각 또는 환입하여 국채에 대한 이자비용에 더하거나 뺀다.

<신 설>

제44조(연금충당부채 및 보험충당부채의 평가) 연금충당부채 및 보험충당부채는 기획재정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신 설>

<신 설>

-----.

③ 공채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44조(연금충당부채 및 퇴직수당충당부채의 평가) ① 연금충당부채는 연금추정지급액 중 재정상태표일 현재의 재직기간까지 귀속되는 금액을 현재가치로 산정하여 평가한다.

② 제1항의 연금추정지급액이란 재정상태표일 현재의 연금가입자에게 근무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장래 예상퇴직시점에 지급하여야 할 금액으로, 예상퇴직시점의 장래 추정보수와 전체 추정근무기간 등 보험수리적 가정을 반영하여 산정한 것을 말한다.

③ 퇴직수당충당부채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신 설>

<신 설>

제45조(용자보조원가충당금과 보
증충당부채의 평가) ① 용자보
조원가충당금은 용자사업에서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
항 외에 연금충당부채 및 퇴직
수당충당부채의 회계처리에 관
한 세부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
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4조의2(보험충당부채 평가) ①
재정상태표일 이전에 보험사고
가 발생하였으나 미지급된 보험
금 지급예상액과 재정상태표일
현재 보험사고가 발생하지는 않
았으나 장래 발생할 보험사고를
대비하여 적립하는 지급예상액
으로 평가한다.

② 관련 법령에 의한 적립금과
준비금 산정 방식이 제1항의 산
정방식과 유사한 경우 그 적립
금과 준비금을 보험충당부채로
볼 수 있다. 다만, 미경과보험료
적립금은 제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
항 외에 보험충당부채의 회계처
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획재정
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5조(보증충당부채의 평가)
<삭 제>

발생한 융자금 원금과 추정 회
수가능액의 현재가치와의 차액
으로 평가한다.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
항 외에 융자보조원가충당금 및
보증충당부채의 회계처리에 관
한 세부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
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7조(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평가) ① ·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발생하는 환율
변동효과는 외화평가손실 또는
외화평가이익의 과목으로 하여
재정운영순원가에 반영한다.

④ 비화폐성 외화자산과 비화폐
성 외화부채에서 발생한 손익을
조정항목에 반영하는 경우에는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
도 해당 조정항목에 반영하고,
재정운영순원가에 반영하는 경
우에는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
변동효과도 해당 재정운영순원
가에 반영한다.

⑤ · ⑥ (생략)

제49조(과생상품의 평가) ① (생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
----- 보증충당부채-----

-----.

제47조(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평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재정운영결과-----.

④ -----

순자산조정에 반영하는 -----

----- 순자산조정에 반영하고,
재정운영결과-----

----- 재정운영결과
에 반영한다.

⑤ · ⑥ (현행과 같음)

제49조(과생상품의 평가) ① (현

략)

② 파생상품에서 발생한 평가손익은 발생한 시점에 재정운영순원가에 반영한다. 다만, 미래에 상거래의 현금흐름변동위험을 회피하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평가손익은 순자산변동표의 조정항목 중 파생상품평가손익으로 표시한다.

③ (생략)

제5장 순자산변동표

<신설>

제6장 필수보충정보, 주식 및 부속명세서 등

<신설>

제54조(필수보충정보) ① 필수보충정보는 재무제표에는 표시하지 아니하였으나, 재무제표의 내용을 보완하고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정보를 말한다.

② 필수보충정보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유산자산의 종류, 수량 및 권리상태

2. 연금보고서

행과 같음)

② -----
----- 재정운영결과-----.

---- 으로 한다.

③ (현행과 같음)

<삭제>

제6장 순자산변동표

<삭제>

제7장 주식

<삭제>

3. 보험보고서

4. 사회보험보고서

5. 국세징수활동표

6. 충잉여금·재정운영결과조정
표

7. 수익·비용 성질별 재정운영
표

8. 그 밖에 재무제표에는 반영
되지 아니하였으나 중요하다
고 판단되는 정보

③ 필수보충정보의 작성기준과
서식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
는 바에 따른다.

제55조(주식) ① (생 략)

② 이 규칙에서 규정한 주식 사
항 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식으로 표시
한다.

1. 중요한 회계처리방법

2. 장기차입부채 상환계획

3. 장기충당부채

제55조(주식)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

1.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회계
처리에 적용한 회계정책

2. 이 규칙에서 주식 공시를 요
구하는 사항

3.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
자산변동표 및 현금흐름표의
본문에 표시되지 않은 사항으
로서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4. <u>외화자산 및 외화부채</u> 5. <u>우발사항 및 약정사항(지급 보증, 파생상품, 담보제공자산 명세를 포함한다)</u> 6. <u>전기오류수정 및 회계처리방법의 변경</u> 7. <u>순자산조정명세</u> 8. <u>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과 재무제표의 이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u> ③ <u>주석의 작성기준과 서식</u>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u>제56조(부속명세서) 부속명세서는 재무제표에 표시된 회계과목에 대한 세부 명세를 명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서, 부속명세서의 종류, 작성기준 및 서식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u> <u>제7장 보칙</u> <u><신 설></u>	<u>필요한 추가 정보</u> <u><삭 제></u> <u><삭 제></u> <u><삭 제></u> <u><삭 제></u> <u><삭 제></u> ③ ----- 종류, 작성기준 및 -----. <u><삭 제></u> <u><삭 제></u> <u>제8장 보칙</u>
---	---